

<제 583호>

-주간- **광주 경영계**

### 광주은행

#### ◆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경제활성화 간담회 개최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난 25일 송종욱 광주은행장과 유동국 전남테크노파크 원장, 정양수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전남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각 기관은 적극적인 동반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산업 기술혁신과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 등을 실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 금호타이어

#### ◆ ‘함께 Green 희망의 공부방’ 22호점 개소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전대진)는 지난 27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서울지역본부에서 ‘함께 Green 희망의 공부방’ 22호점 완공식을 가졌다.

‘함께 Green 희망의 공부방’ 지원 활동은 2016년부터 금호타이어가 저소득 가정 청소년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이 활동을 통해 금호타이어는 수도권 내 청소년(중고

등학생)이 있는 저소득 가정에 학습 교구와 생활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학업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다.

‘함께 Green 희망의 공부방’ 지원 활동은 지난 2016년 사내 사회공헌활동 아이템 공모전을 통해 채택된 아이디어로 실생활에 바로 적용 가능한 혜택을 받는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 II. 광주경총 소식

### 〈노사민정협의회 제2차 운영협의회 개최〉



본회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26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및 충격을 받은 지역기업 및 근로자간의 상생분위기 조성 및 고용안정 릴레이 캠페인 추진을 위한 제2차 운영협의회를 개최했다.

운영협의회는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산하 협의체로, 노사민정 각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과 지역특성에 맞는 의제를 발굴하여 노사협력, 일자리 창출지원, 노사파트너십 구축 등 구체적인 성과도출을 위한 협의체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노사협력 분위기를 조성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유도하고 노사민정 차원에서 피해를 받은 지역기업 및 근로자 지원방안 모색과 오는 28일 노동절 행사시 추진하는 노사민정 사회적 책임실천 선언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의 중소기업이 경영한계상황에 직면에 있고, 근로자 또한 무급휴직 등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노사민정 차원에서 빠른 지원대책을 제시해야 된다.”고 말했다.

특히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의 중소기업이 경영한계상황에 직면에 있고, 근로자 또한 무급휴직 등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노사민정 차원에서 빠른 지원대책을 제시해야 된다.”고 말했다.

### 〈광주경총-에듀에이컴퍼니 상호협력 업무협약〉



본회는 지난 29일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김봉길 회장(광주경총)과 김도형 대표(에듀에이컴퍼니)가 참석한 가운데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현재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경총 회원사 등 지역기업에 법정 의무 교육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콘텐츠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봉길 회장은 “오늘 협약이 지역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인재양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광주경총 회원사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에듀에이컴퍼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 나갈 전문인력 양성과 더불어 기업과 기관에 맞는 맞춤형 교육서비스, 차별화된 고품격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II. 광주경충 소식

### <제1486회 금요조찬포럼>

광주경영자총협회는 5월29일(금) 광주과학기술진흥원 12층에서 박서기 IT혁신연구소장을 초청하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비즈니스모델 대변혁」이란 주제로 제1486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이다.

최적화, 합리화 목표가 아니라 기업전환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만들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매출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Transformation은 디지털 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성공 방정식이다. 내 고객들을 속속들이 파악해 보는 노력과 이 제품의 서비스가 왜 필요한지를 고민해야 한다.

새로운 사업에 대해 고민의 시간이 걸린다면 현재 하는 사업에 있어 지금까지 있어온 서비스보다 더 빠르고 더 편리하고 더 저렴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파괴적 혁신이다. 우리 주변에서 표준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모두 5년 이내에 바뀐다. 비즈니스와 관련된 상식이 바뀌게 된다.

새로운 세상은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는 시대가 아니고 빠른 물고기가 큰 물고기를 먹는 시대이다. 사업을 하려면 “5천만명이라는 익명의 대중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라. 당신의 서비스나 제품이 사라지면 아쉬워할 50명부터 확보하라”고 권하고 싶다. 가치지향의 핵심은 내가 누구에게 내 서비스를 팔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 내가 무엇을 하는가. 서비스의 핵심은 무엇이지. 주요 고객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누가 이것을 원하는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고객들이 이 제품을 썼을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시나리오상으로 작성한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한다. 그러면 새로운 변화를 경험할 것이다.



### 사무국 일지(5. 25 ~ 5. 29)

5. 26 (화)	● 노사민정협의회 제2차 운영협의회	5. 28 (목)	● 일·생활 균형 지역 추진단 회의
5. 27 (수)	● 에너지 혁신 소통위원회	5. 29 (금)	● 에듀에이컴퍼니 상호협력 업무협약 ● 제1486회 금요조찬포럼

## 1. 노사 동향

### ■ 정부는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올해 말까지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후 사회적 대화를 거쳐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 발표(5. 21, 기자브리핑)
- 특수형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올해 국회 입법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며, 전속성이 높은 직종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

#### [ 참고 ] 국회 통과(5. 20) 주요 법안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고용보험법, 보험료징수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인 고용보험 의무가입(특수형태종사자는 21대 국회에서 논의)</li> <li>- 주요 내용 : 문화예술 용역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지급</li> <li>- 수급요건 : 이직일 전 24개월 중 보험료납부기간이 9개월 이상 (근로자는 18개월 중 180일)</li> <li>-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li> </ul>

### ■ 노동계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요구안 제출

- 노사정 실무회의가 5. 26 개최된 가운데 양 노총은 해고금지,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요구안을 제출
- 한국노총은 해고금지 및 총고용유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 요구안 제시
- 민주노총은 재난시기 모든 해고금지 및 생계소득 보장,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과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를 핵심 요구사항으로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세부 요구안 제시

### Ⅲ. 노사 및 판례동향

#### [ 참고 ] 양 노총 요구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한국노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고금지 및 총고용유지 : 해고제한법 제정 및 총고용유지, 고용유지 지원 확대, 조업단축 지원제도 개선 등</li> <li>▲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및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조속한 확대시행 등</li> <li>▲일자리 인프라 확대 : 공공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대, 돌봄,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등</li> <li>▲상병수당 도입 및 국가재난 질병관리 인프라 확충</li> <li>▲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의 경제민주화 실현 : 납품단가 보장 등 공정거래 준수, 가맹수수료·임대료 인하 등</li> </ul>
민주노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시기 모든 해고금지 및 생계소득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취약노동자 최우선 보호) 특수고용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위한 특별 고용유지·생계소득 보장 대책 강화</li> <li>② (해고없는 위기극복 모델) 고용유지 전제 기업지원 정책 마련 등</li> <li>③ (포스트 코로나 준비) 올바른 뉴딜 정책과 일자리 정책 수립</li> <li>④ (확대 재정정책) 세제개편, 재벌의 책임 강화, 고용기금 조성</li> <li>⑤ (법 개정) 재난 시기 모든 해고금지, 생계소득 보장 위한 법제도 개선</li> </ul> </li> <li>▲전국민 고용보험 도입과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특고 노동자 우선 적용 입법화</li> <li>② 국가방역체계 강화 및 공공의료 확충, 원격의료 도입 반대 등</li> <li>③ 공공 일자리 늘리기</li> </ul> </li> </ul>

○ 한편, 민주노총은 5. 27 박원순 서울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 방안 논의

- 민주노총과 서울시는 ‘전국민고용보험제 신속 추진’, ‘해고 없는 서울’, ‘광역단위 노동행정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공동대응을 강화하기로 약속

※ 박원순 서울시장은 5. 29 한국노총과 간담회 개최 예정

## 2. 판례 동향

CCTV 수당이 실비변상 명목으로 지급되거나 물품구입권의 형태(현물)로 교부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임금 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음(대법원 2020.4.29. 선고, 2016다7647 판결).

### 1. 사실관계

- 이 사건 회사와 근로자가 속한 노동조합은 1998.3월경 운행버스에 CCTV를 설치하면서 당일 출근하는 모든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연초(담배), 장갑, 음료수, 기타 잡비 명목으로 일비 1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함.
- 이후 2012.1월경 노사는 노후한 CCTV를 철거하고 새로운 CCTV를 설치하면서 음료대금 명목으로 일비 5,000원을 지급하기로 협약을 맺음.
- 또한 같은 협약에서 CCTV 설치가 완료되는 2012.1.19. 이후에는 실비변상조로 장갑, 음료수, 담배, 기타 잡비 명목으로 일비 10,000원에 상당하는 회사 발행의 구내매점용 물품구입권을 지급하기로 함.
- 원심은 2012.1.18까지 통화로 지급한 CCTV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본 반면 그 이후 물품구입권 형태로 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함.
  - 물품구입권의 사용처가 한정돼 있고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으며, 장갑, 음료수, 담배 등 물품은 근로자의 후생복지나 근로제공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조치라는 이유였음.

### 2. 판결요지

- 2012.1.18.까지 현금으로 지급된 CCTV 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함(원심 판결과 동일).
- 2012.1.19. 이후 구내매점용 물품구입권 형태로 지급된 CCTV 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함(원심과 상이).

### Ⅲ. 노사 및 판례동향

- 물품구입권은 운전직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관련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소정 근로의 대가임.
-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무일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CCTV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확정되어 있었으며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됨.
- 비록 실비변상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회사 발행의 물품구입권으로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 물품 구입권을 실제 경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가 CCTV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음.

### 3. 시사점

- 금번 판결은 물품구입권이라는 현물 지급에 대한 임금성을 인정하고, 그 현물의 사용처가 한정된 경우까지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음.
- 보통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금번 판결의 경우 실제 경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당을 미지급하거나 감액한 사례가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 물품구입권의 임금 및 통상임금성을 긍정함.
- 또한 금번 판결은 현물을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에도 임금 및 통상임금성을 인정함.
  - ※ 이와 반대로 ‘현물로 제공한 식권에 대해 식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물품이나 현금으로 대체 청구할 수 없을 때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 사례도 존재함(대법 2000다29370). 끝.